

|       |                    |      |
|-------|--------------------|------|
| 의안번호  | 제 호                | 의결사항 |
| 의결연월일 | 2024. . .<br>(제 회) |      |

전문위원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                       |
|-------|-----------------------|
| 제출자   | 국무위원 ○○○<br>(보건복지부장관) |
| 제출연월일 | 2024. .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전문위원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보건의료정책적 필요나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공의 수련 등에 관하여 특례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수련 및 전공의 자격인정 등에 관한 특례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정책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4조, 제5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6조에 따른 수련 및 전공의 자격 인정 등에 대하여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 기준을 정할 수 있다.

4. 주요토의과제

없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부령 제 호

##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수련 및 전문의 자격 인정 등에 관한 특례)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정책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 발생 또는 발생 우려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4조, 제5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6조에 따른 수련 및 전문의 자격 인정 등에 대하여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 기준을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신 설> | 제21조(수련 및 전문의 자격 인정 등에 관한 특례)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정책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 발생 또는 발생 우려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4조, 제5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6조에 따른 수련 및 전문의 자격 인정 등에 대하여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 기준을 정할 수 있다. |

## < 의안 소관 부서명 >

| 의료인력정책과 |                     |
|---------|---------------------|
| 연 락 처   | 044-202-2435 / 2436 |